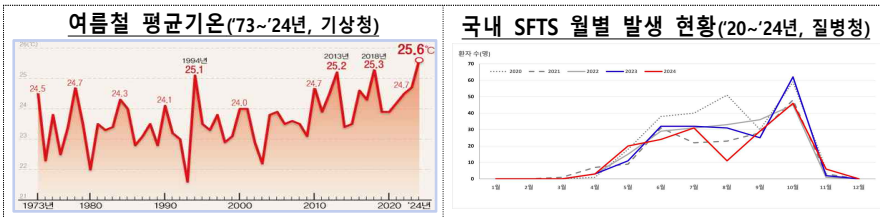


2025년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 배경

- 올해 6~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
 - * 기상청 3개월 전망: (6월) 평년보다 대체로 높음, (7~8월) 평년보다 높음
- 온열질환자는 산림사업장에서는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
 - * 온열질환자(사망)(명): ('20) 1,078⁽⁹⁾, ('21) 1,376⁽²⁰⁾, ('22) 1,564⁽⁹⁾, ('23) 2,818⁽³²⁾, ('24) 3,704⁽³⁴⁾
- 여름철은 진드기*, 말벌, 독충 등의 노출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야외에서 작업하는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필요
 - * SFTS 환자(사망)(명): ('20) 243⁽³⁷⁾, ('21) 172⁽²⁶⁾, ('22) 193⁽⁴⁰⁾, ('23) 198⁽³⁸⁾, ('24) 170⁽²⁶⁾
 - ** SFTS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온열질환 예방 대책

○ 5대 기본 수칙 준수

1. 물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염분 섭취
2. 그늘·바람 (작업장 온도 낮추기)	■ 작업 시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막(선파터)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3. 휴식 (주기적으로 쉬기)	■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근로자 체온 낮추기)	■ 냉각의류, 냉각조끼, 쿨토시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5. 응급조치 (119에 신고하기)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체감온도 상시 확인 및 근로자 관리 강화

- 해당 작업장 주변의 체감온도를 날씨알리미 앱(기상청), 폭염 영향 예보(산림청 안전사고 알림방) 등을 통해 작업 전·중 확인
-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기상상황 등 폭염정보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철저(건강상태 확인, 고강도 작업 조정)
 - * ▲비만, 당뇨, 고·저혈압 등 질환자 ▲온열질환 과거 경험자 ▲고령자 ▲폭염 노출작업 신규 배치자 등

○ 산림사업장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

- 작업 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붙임2)
- 여름철 안전보건 관리실태 확인을 위한 소사적 점검 추진(6~8월)
 - * 본청, 사업부서, 소속기관 등은 현장점검 시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확인
- 체감온도별 작업·휴식시간을 근로자(직접일자리 포함)와 협의(6월)
 - * 도급사업장은 월 1회 이상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하여 작업·휴식시간 결정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 혹서기(6~9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 시설(구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비용(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총액의 15%)
 - *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에 비치하는 의자 등

○ 온열질환 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

- 비상 상황 보고체계 유지 및 주체별 주요 의무사항 숙지

사고발생 기관	1차 소속기관	본청
- 작업 중지 및 대피 - 119 요청 및 구조 - 온열질환 예방조치 파악 - 1차 소속기관 보고	- 사고상황 및 경위 파악 - 사고 원인조사 - 보건관리자 주관 온열질환 예방조치 적정성 검토	- (상황실) 사고사례 공유 - (사업부서) 온열질환 대응 - (전담조직) 진행상황 보고 및 중대재해 대응

- 모든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주요증상(붙임3) 및 응급조치(붙임4) 교육
 - * 주요증상 : 고열, 빠른 맥박, 호흡, 피로감, 두통, 근육경련, 땀 등
- 온열질환 위험 증가 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 *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 작업 중지 가능(중지 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

□ 진드기 매개 감염병(SFTS) 예방 대책

○ 예방수칙 준수 및 사업장 전파

1. 작업 및 야외 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진드기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긴팔, 긴바지, 모자 등) 착용 ■ 작업 시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넣기 ■ 진드기 기피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2. 작업 및 야외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깔개) 등을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 피하기
3.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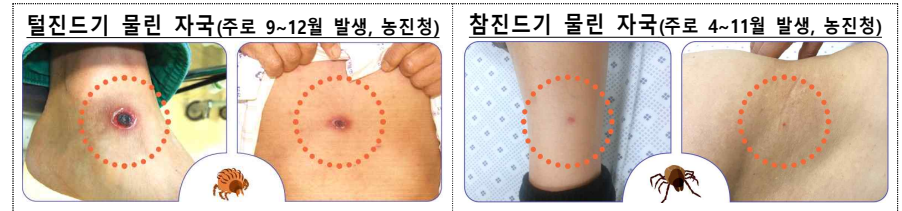
○ 주요증상 등 진드기 매개감염병 관련 내용 교육

- SFTS는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며, 비교적 긴 잠복기(5~14일)와 높은 치사율(12~47%)을 보이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교육

< 주요증상 >

발열	오한	- 38도 이상의 고열 : 3~10일간 지속 - 소화기 증상 : 설사, 구토, 복통, 식욕부진 등 - 림프절 증상 : 증상발생 5일 후에 나타나 1~2주 지속 - 출혈성 증상 : 혈뇨·변, 잇몸 출혈, 피부반상 출혈, 점막/결막 출혈 - 신경학적 증상 : 피로감, 근육통, 말 어눌, 의식저하 등 - 다발성 장기부전 동반 가능
근육통	설사, 구토	

< 휴식시간 또는 작업종료 후 진드기 물린 자국 확인>



○ 주요증상 및 물린 자국 등 확인 시 주변 보건소, 의료기관에 내원

□ 벌 쏘임 예방 대책

○ 예방 수칙 준수 및 사업장 전파

1. 작업 전 사전준비	■ 사전 현장 조사 후 벌집 주변 출입 통제 ■ 작업 전 벌 쏘임 관련 안전교육 실시 ■ 벌 방지망 및 피부 노출이 없는 작업복 착용 ■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등 자제 ■ 사전 알레르기 검사 후 비상약품, 스프레이 등 구비
2. 작업 및 야외활동 시	■ 말벌 출몰지역 등 출입 통제 구역 접근 금지 ■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몸을 낮추고 20m 이상 거리 이탈 ■ 벌 접근 시 준비한 모기약, 스프레이 등 활용
3. 벌 쏘임 응급처치	■ 신용카드 등으로 환부의 벌침 제거 ■ 얼음주머니 등 차가운 것으로 붓지 않게 하고 증상 관찰

○ 산림사업장 별 쏘임 주요증상 교육 및 사례 전파

- 주요증상 : 통증, 두통, 어지러움, 호흡 곤란, 알레르기 과민반응* 등

* 구토, 두드러기, 입술·혀·목젖 부종, 저혈압, 심장마비, 실신, 빠른맥박 등

- 별 쏘임 사례('24.)

일 자	피해 내용
7.11.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고사목 시료 채취 중 말벌에 2명 쏘임
7.16.	덩굴류제거 작업 중 3명이 벌에 쏘임(숲가꾸기패트롤)
8.28.	풀베기 작업 중 벌집을 예초기로 건드려 4명이 벌에 쏘임(산불재난 특수진화대)
9.05.	기설임도 예초용 소형굴착기 풀베기 작업 중 중장비 운전원 2명이 말벌에 쏘임

○ 근로자 알레르기 검사 및 안전관리 강화

- TBM 등을 통해 벌 쏘임 위험지역 공유 및 응급처치 방법 교육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벌 쏘임 노출 빈도가 높은 근로자 대상으로 벌 알레르기 여부 검사 실시
- 도급사업장은 사업 실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근로자 대상으로 알레르기 검사 실시
- 벌 쏘임 알레르기 보유자는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비상약품 상시 휴대

□ 향후 계획

○ 혹서기 안전보건 관리 실태 집중 점검(6.18.~7.11.)

* 사업부서, 1차 소속기관 현장점검 시 체크리스트 확인 결과 제출(7.25.까지)

○ 온열질환 예방 리플릿 및 안전 물품(키트) 배부(6월, 붙임8 참고)

* (리플릿) 2025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작업 요령
(안전 물품) 진드기 기피제, 이온음료 분말가루, 휴대용 방석

붙임 1

온열질환 관련 사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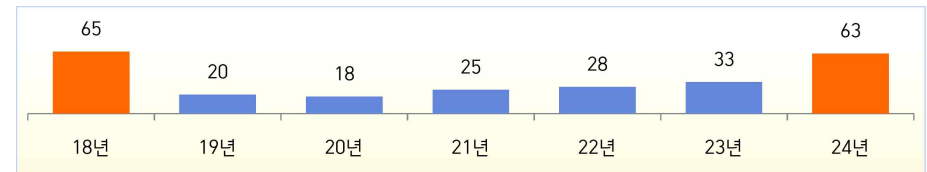
□ 연도별 온열질환 발생 현황(질병관리청)

※단위: 참여기관(개), 환자수(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운영기간	7.1~9.3	6.1~9.6	6.2~9.7	6.1~9.6	5.24~9.5	5.23~9.21	5.29~9.8	5.20~9.10	5.20~9.20	5.20~9.13	5.20~9.30	5.20~9.30	5.20~9.30	5.20~9.30
참여기관	491	459	437	541	539	529	527	521	508	503	494	497	504	507
환자 수 (추정 사망자)	443 (6)	984 (15)	1,189 (14)	556 (1)	1,056 (11)	2,125 (17)	1,574 (11)	4,526 (48)	1,841 (11)	1,078 (9)	1,376 (20)	1,564 (9)	2,818 (32)	3,704 (34)

* 참여기관은 감시체계 운영시작일 기준 ** 환자수는 추정 사망자 수 포함

□ 2024년 온열질환 산재 현황(고용노동부)



□ 2024년 주별 온열질환자 현황(질병관리청)

주별 증상발생	온열질환자수(명)	온열질환 추정사망자수(명)
계	3,074	34
1주(05.20.~05.25.)	31	1
2주(05.26.~06.01.)	12	-
3주(06.02.~06.08.)	20	-
4주(06.09.~06.15.)	143	1
5주(06.16.~06.22.)	106	-
6주(06.23.~06.29.)	65	-
7주(06.30.~07.06.)	92	1
8주(07.07.~07.13.)	75	-
9주(07.14.~07.20.)	76	-
10주(07.21.~07.27.)	337	1
11주(07.28.~08.03.)	635	12
12주(08.04.~08.10.)	660	6
13주(08.11.~08.17.)	527	4
14주(08.18.~08.24.)	376	6
15주(08.25.~08.31.)	166	-
16주(09.01.~09.07.)	74	-
17주(09.08.~09.14.)	190	2
18주(09.15.~09.21.)	97	-
19주(09.22.~09.28.)	15	-
20주(09.29.~09.30.)	7	-

붙임 2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산림사업장용)

사업장명	○○국유림관리소(2025년 제12차 풀베기사업장)		
소재지	강원. 원주. 00읍. 00리 산00	사업주	

점검 항목	점검 결과
1.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1-1. (물)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지 (안전보건규칙 제571조)	☐ 적정 ☐ 개선필요
1-2-1. (바람·그늘)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가 제공되고 있는지 (안전보건규칙 제567조제2항)	☐ 적정 ☐ 개선필요
1-2-2. 작업시간대 조정 등 휴식시간이 적절히 부여되는지 (안전보건규칙 제566조)	☐ 적정 ☐ 개선필요
1-3-1. (휴식)안전한 그늘진 장소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우며, 유해위험 장소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 유해위험 : ①화재·폭발 물질 ②걸린나무·부러진 나뭇가지 등 떨어짐, ③주변 근로자 소음 노출, ④차량 통행 위험(사고, 분진노출) ⑤경사지, 암석지 주변 위치, ⑥벌, 진드기 등 독충의 쏘임 또는 물림	☐ 적정 ☐ 개선필요
1-3-2. 폭염 단계별 휴식시간*이 부여되는지 (온열질환예방가이드) * 체감온도 31℃ 이상(적절한 휴식), 체감온도 33℃ 이상(2시간 이내 20분), 체감온도 35℃ 이상(매시간 15분)	☐ 적정 ☐ 개선필요
1-4. (보냉장구) 근로자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 보냉장구를 제공하는지	☐ 적정 ☐ 개선필요
1-5-1. (응급조치)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하였는지	☐ 적정 ☐ 개선필요
1-5-2.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이 없을 시 119에 신고하였는지	☐ 적정 ☐ 개선필요
2. 체감온도 확인, 민감군 관리 등 모니터링, 업무담당자 지정 여부	
2-1. (체감온도) 작업장소 체감온도 수시 확인* 및 조치사항 기록 보관 * (실외) 작업 하루 전 폭염 영향예보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등)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확인(지역별 체감온도 제공)	☐ 적정 ☐ 개선필요
2-2.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확인하는지	☐ 적정 ☐ 개선필요
2-3. (온열질환 민감군 등)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지 *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등	☐ 적정 ☐ 개선필요
2-4.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폭염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 작업강도, 보냉장구 착용 여부 등을 관리하는지	☐ 적정 ☐ 개선필요
3. 온열질환 예방 교육, 가이드 홍보 및 조치 여부 등	
3-1. 온열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지	☐ 적정 ☐ 개선필요
3-2.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 적정 ☐ 개선필요
3-3. 폭염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하였는지	☐ 적정 ☐ 개선필요

20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성명

(인)

붙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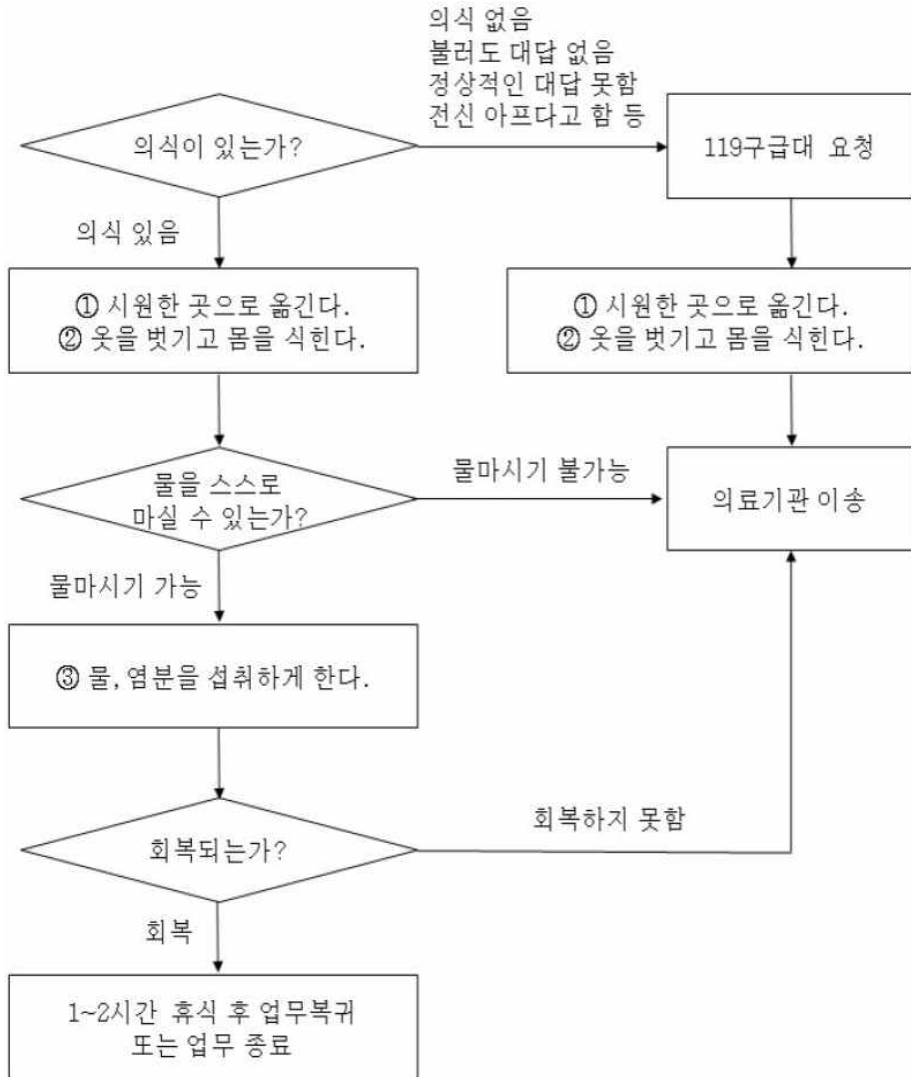
온열질환 종류 · 주요증상에 따른 현장 대응 요령

질환 종류	주요 증상	현장 대응
열사병	• 현기증, 두통, 경련 등 • 전구증상 • 의식상실(기절) • 뜨겁고 마른 피부 • 체온 40℃ 이상	• 즉시 119 신고 및 이송 • 옷을 모두 벗김 • 냉수 뿌리기, 선풍기 • 얼음마사지
열탈진	• 두통, 구역감, 현기증, 무기력증, 갈증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열경련	• 수의근에 통증이 있는 경련 발생 • 사지 동통, 발작적 경련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열허탈	• 전신권태, 탈진, 현기증 • 의식상실(기절) • 심박수 증가, 혈압 저하 • 정상 체온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 의식 없을 경우 의료기관 이송
열피로	• 구갈, 소변량 감소, 현기증 • 사지의 감각이상 • 보행곤란 • 실신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 의식 없을 경우 의료기관 이송
열발진	• 땀띠 • 붉은 구진	• 발생부위 냉각 • 세척 후 건조

* 스포츠음료(이온음료), 알갱이 없는 과즙주스, 또는 물 1L에 소금 1티스푼 미만을 탄 소금물로, **소금 혹은 식염정 그대로 복용 금지**

붙임 4

작업장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조치 흐름도(KOSHA)



붙임 5

2025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작업 요령 (산림청)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 제4항 제7호 (25.6.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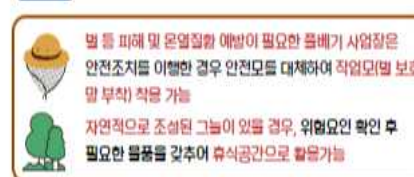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중 "폭염, 한파에 걸시간 작업장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애" 신설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가이드



혹서기(6월~9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고용노동부고시(제2025-11호)」

-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음료,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 ✓ 전막, 텐트 등 간이 휴게 시설 (구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 (임대비용)
- ✓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5%)
- * 냉방고, 냉방고, 제빙기 임대비용, 에어컨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에 비치하는 의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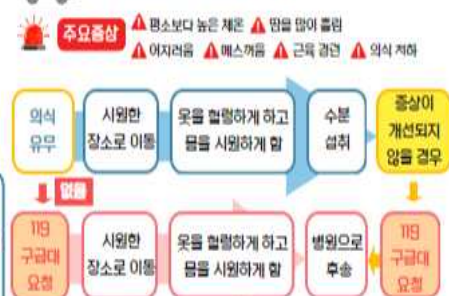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 공통 사항**
체감온도 31°C 이상
- 기상 상황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및 관리
- 주의**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주의보
- 2시간 이내 2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경고**
체감온도 35°C 이상, 폭염경보
- 매 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위험**
체감온도 38°C 이상, 폭염경보
- 매 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온열질환 응급조치



* 의식이 없는 경우 수분섭취 절대 금지

벌 등 독충 피해 예방가이드



사고사례(2024)

벌초를 하다가 말벌에 쏘여 쓰러지며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

- 주요 증상**
- ▶ 통증, 피부 가려움, 붓기, 식은땀,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
 - ▶ 호흡 곤란, 의식 저하, 혈압 저하 등
 - ▶ 사람에 따라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과민반응) 발생
- ※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

벌쏘임 예방수칙

- 작업 전 벌 쏘임 관련 안전교육 실시
- 작업 전 벌 방지망 착용하고 벌집이 있는지 확인
- 사전 알레르기 검사 후 비상약품(알라스테인) 구비
- 119 출동 대비를 위한 활동 장소 위치 파악
- 해충퇴치 스프레이 등을 준비
-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동을 낮춰 20m 이상 빠르게 대피

벌쏘임 응급조치

- 신용카드 등으로 할부와 법적 제거
- 열을 주거나 얼음팩을 냉찜질하고 증상이 악화되는지 경과 관찰
- 손 또는 핀셋을 이용하여 벌침을 제거하는 것은 벌침을 파서 벌 독이 더욱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
- 핀셋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들어올려 제거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가이드



사고사례(2025)

산나뭇를 채취하다 진드기에 노출돼
입원 치료중 사망

- 주요 증상**
- ▶ 발열
 - ▶ 오한
 - ▶ 근육통
 - ▶ 설사구토

진드기 예방수칙

- 밝은 색 긴 옷, 모자, 장갑 착용
- 취식 등 풀밭에 있을 때 돗자리 사용
- 풀밭 위에 옷 벗어놓지 않기
- 진드기 기피제 지속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용
-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 귀가 후 샤워 및 세탁, 벌레 물린 상처 확인

진드기 응급조치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드기 제거

붙임 6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고용노동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 5대 기본수칙 준수



5대 기본수칙 준수

- 물**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바람·그늘**
 - ☑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휴식**
 -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선풍기) 설치
 -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보냉장구**
 -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응급조치**
 - ☑ 온열질환자 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작업중지

- ☑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2025-산업보건실-246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1 온열질환 민감군

-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2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 ☑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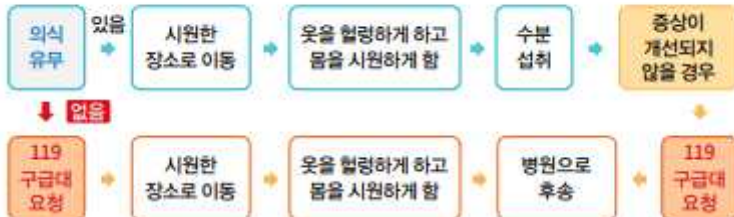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질병관리청)

1 온열질환 증상

-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2 온열질환 조치 요령

-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물을 식히세요
-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붙임 6-1

폭염안전 3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1. [물]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 적정 ☐ 개선 필요

2. [바람·그늘] 실내·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

-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적정 ☐ 개선 필요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적정 ☐ 개선 필요

3. [휴식] 주기적으로 쉬기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시원한 물 비치 ☐ 적정 ☐ 개선 필요
-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적정 ☐ 개선 필요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적정 ☐ 개선 필요

4. [보냉장구] 근로자 체온 낮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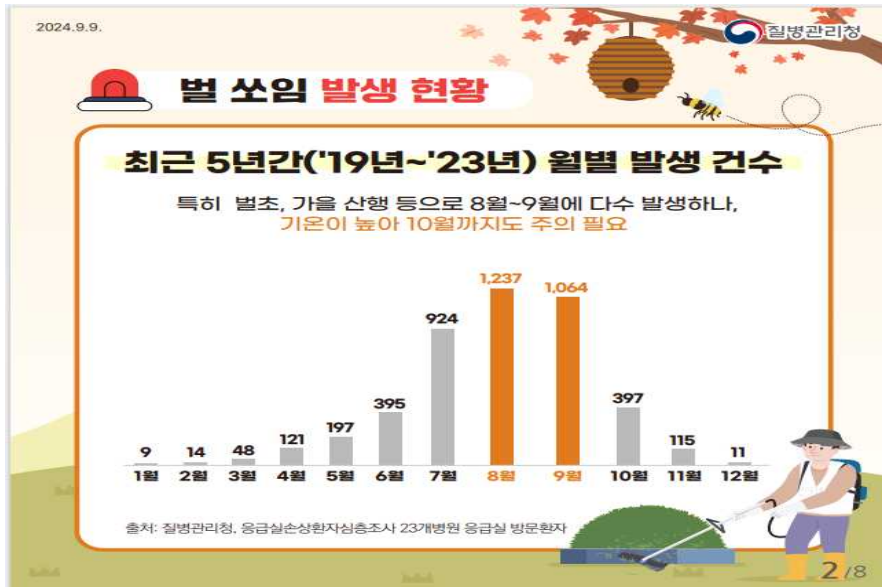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적정 ☐ 개선 필요

5. [응급조치] 119에 신고하기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 ☐ 적정 ☐ 개선 필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적정 ☐ 개선 필요

6. 그 외 예방조치

-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적정 ☐ 개선 필요
-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방법,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적정 ☐ 개선 필요
-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조치사항 기록·보관 ☐ 적정 ☐ 개선 필요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계획 수립
*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등 ☐ 적정 ☐ 개선 필요



2024.9.9. 질병관리청

벌 쏘임 응급처치 방법

신용카드 등으로 신속히 환부의 벌침 제거

얼음주머니 등 차가운 것으로 붓지 않게 하고 증상이 악화되는지 경과 관찰



손 또는 핀셋을 이용하여 벌침을 제거하는 것은 벌침을 짜서 벌 독이 더욱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5/8

2024.9.9. 질병관리청

아나필락시스 증상이란?

피부
두드러기
가려움증
홍조
입술·혀·목젖의 부종

신경
안절부절 못함
실신
의식저하

심혈관
저혈압
심장마비
빠른 맥박

소화기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호흡기
코막힘
콧물
재채기
기침
신 목소리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쌉쌉소리



7/8

2024.9.9. 질병관리청

벌 쏘임 시 나타나는 증상

통증
피부 가려움
부기

식은땀
두통
구토
어지러움증
호흡 곤란
의식저하 등

사람에 따라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과민반응)
발생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

6/8

2024.9.9. 질병관리청

일상생활에서 벌 쏘임 예방으로 즐겁고 건강한 삶을 보내세요.



8/8

붙임 8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안전 물품 (키트)

□ 구성 및 수량 : 3개 품목, 400set

		
접이식방석(2)	모기진드기기피제	이온음료 분말가루

□ 배부표

배부처	안전물품	리플렛
합계	400	2,000
본청	3	40
북부지방산림청	20	200
동부지방산림청	20	200
남부지방산림청	20	200
서부지방산림청	20	200
중부지방산림청	20	200
국립산림과학원	12	60
국립수목원	12	60
산림교육원	12	60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12	6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2	60
산림항공본부	12	60
산림안전특임관	192	400
소규모컨설팅	33	200